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4.
3. 회부연월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단은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

	<u>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 <u>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u> <u>2.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u> <u>3.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u>
--	---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¹⁾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²⁾, 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³⁾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음.

[표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실적

차수	구분	지급규모		업체당 지원금액
		금액	업체 수	
1	새희망자금(2020.9)	2.8조원	251만개	100~200만원
2	버팀목자금(2021.1)	4.2조원	301만개	100~300만원
3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3)	4.8조원	291만개	100~500만원
4	희망회복자금(2021.8)	4.3조원	190만개	40~2,000만원
5	방역지원금 1차(2021.12)	3.5조원	353만개	100만원
6	방역지원금 2차(2022.2)	10.7조원	365만개	300만원
7	손실보전금(2022.5)	22.6조원	373만개	600~1,000만원
합계		52.9조원	2,124만개 (중복 제거 시 471만개)	

자료: KDI,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 2023.11., p.4

이후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집행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 사업이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⁴⁾됨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3)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1~7차 재난지원금), 소기업(3~7차 재난지원금), 일부 중기업(6·7차 재난지원금)

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7.)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조원이 집행된 대형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지급대상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향후 현금성 지원금 지급정책 검토시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⁵⁾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매출액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 지원취지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지원요건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자 또는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를 지원한 사례가 발생하였음.⁶⁾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⁷⁾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정보는 폐업 여부 등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자료이므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정확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음.⁸⁾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⁹⁾에 따라 타인에게 제

5) 감사원, 「감사보고서-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 pp.1-2

6) 감사원,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7.24.

7)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의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정보 등으로 구성됨.

- (사업자등록정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등

- (매출액정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매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신용카드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등

8) 감사원, 「감사보고서-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 p.119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나,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사후 동의를 전제로 국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¹⁰⁾ 향후 유사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¹⁾¹²⁾

-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하 생략)
- 10)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2020년 9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과세정보 수집·제공에 관해 협의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긴급 재난지원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020.9.10.)하였으며, 감사원은 2020년 9월 11일에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하였음.
- 11) 감사원, 「감사보고서-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 p.120
- 12) 감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기간(2023.11.13.~12.8.) 중 향

동 감사보고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폐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장래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¹³⁾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출액,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재난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과세정보 요청 주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후 유사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각각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감사원, 「감사보고서-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 p.1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¹⁴⁾ 재난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 정책의 기본적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게 될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청에 따른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제공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및 업무 종료 후 파기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표 2] 과세정보 요청 관련 입법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재난상황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검증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적시된 과세정보 외에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¹⁵⁾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정보 요구·제공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부 과세정보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인바,

국세청도 세부 과세정보 요구·제공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해당 과세정보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수집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¹⁶⁾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65

15)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의 사업자등록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방역조치 대상여부 및 이행기간 등의 방역조치 위반 현황 등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05호)